

울 산 지 방 법 원

제 3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4가합16223 손해배상(기)
원 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
피 고 주식회사 경남은행
창원시 마산회원구 3·15대로 642(지번주소: 같은 구 석전동 246-1)
대표이사 박영빈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일

변 론 종 결 2015. 3. 18.
판 결 선 고 2015. 4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78,541원 및 이에 대한 2012. 7. 19.부터 2015. 4. 8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95%는 원고가, 나머지 5%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40,969,000원 및 이에 대한 2011. 7. 16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피고는 2011. 7. 15. 원고의 부친인 망 A(이하 '망인이라고 한다)의 신청에 의해 내려진 C의 예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고도 그 지급금지 취지의 전산입력을 게을리 하다가, 위 송달 당일 입금된 401,602,455원을 2011. 7. 18. 인출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2. 7.경에는 자신의 신용카드대금채권으로 약 7만 원의 예금과 상계처리 하였다.

피고의 위 인출행위와 상계처리는 위 채권가압류 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망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, 피고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단독 상속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.

2. 사실의 인정

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, 6, 10, 14, 15호증, 을가 제1, 2, 4, 6, 7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2014. 1. 7.자, 2014. 2. 6.자, 2014. 3. 12.자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.

가. 채권가압류 결정과 송달

망인은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울산지방법원에 C을 채무자로, 피

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아래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(2011카합542, 이하 '이 사건 가압류'라고 한다)를 신청하였고, 위 법원은 2011. 7. 13. 위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

141,000,000원

채무자 C이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

1.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.

(1) 선행압류, 사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

(2) 선행압류, 가압류가 된 예금

2.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.

(1) 보통예금, (2) 당좌예금, (3) 정기예금, (4) 정기적금, (5) 별단예금

3.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한다.

을 하였다.

위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1. 7. 15. 오전 9시 53분 피고에게 송달되었고, 피고는 당일 오후 2시 26분 34초 그 지급정지의 취지를 전산입력하였다.

나. 위 송달 당시 C의 예금계좌 현황과 피고에 의한 인출, 상계

위 송달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예금계좌는 총 6개였고 잔액이 존재하는 계좌는 그 중 4개였는데, 그 중 2개에는 이미 잔액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고, 나머지 하나는 4,800원, 계좌번호 693-07-XXXXXX 예금계좌(이하 '이 사건 계좌'라고 한다)는 103,754원의 잔액이 있었다.

그런데 위 송달 당일 오후 2시 52분 23초 이 사건 계좌에 주식회사 D중공업으로부터 기성금 401,498,701원(이하 '이 사건 기성금'이라고 한다)이 입금되었고, 2011. 7. 18. 위 401,498,701원 전액이 E의 계좌로 송금되었다.

또 피고는 2012. 7. 19.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,777,904원의 신용카드대금 채권과 이 사건 계좌의 예금지급채무(당시 1,803,117원의 잔액이 있었다)를 상계(이하 '이 사건 상계'라고 한다)하였고, 그 결과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25,213원이 되었다.

다. 망인의 대여금청구사건과 본압류 이전

망인은 울산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(2011가합5666)를 제기하였는데, 위 법원은 2012. 5. 10. 'C은 망인에게 144,446,3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.

망인은 위 승소판결에 기해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(2012타채6269)을 신청하였고, 이에 위 법원은 2012. 6. 19. 망인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.

라. 망인의 사망과 상속

망인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4. 8. 5. 사망하였고, 원고는 2014. 10. 8. 상속분할협의를 거쳐 이 사건 소송상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.

3. 판단

가. 이 사건 가압류의 피압류채권에 이 사건 기성금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

1) 채권압류에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의 '압류할 채권의 표시'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.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할 때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

있다. 따라서 '압류할 채권의 표시'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,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,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(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0다47117 판결). 또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, 즉 제3채무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때에 즉시 발생하는 것이고, 가압류된 채권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(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3다58720 판결).

2)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, 앞서 본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문언상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해 압류되는 예금채권은 채권가압류 효력이 발생할 당시 존재한 채권 즉, 그 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.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간 이후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기성금은 이 사건 가압류의 피압류채권에 속하지 않고, 그 입금이 위 결정정본 송달된 당일 피고의 영업시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.

나.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

1) 이 사건 가압류 효력이 이 사건 기성금 예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성금 예금을 2011. 7. 18. 인출해 준 행위는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2) 그러나 이 사건 가압류는 그 결정정본 송달 당시 이 사건 계좌 잔액인 103,751

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고, 이 사건 상계는 그 일부가 이 사건 가압류의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므로,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의 가압류 효력에 반하는 처분행위이다. 게다가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 중 위 103,751원에 관한 지급금지 취지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던 상태였으므로 위 상계로 인하여 망인의 가압류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데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는 이 사건 가압류 효력에 반하는 한도 내에서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.

3)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, 위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부당하게 상계처리된 78,541원(=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압류된 금액 103,751원 - 상계 후 남은 금액 25,213원) 및 이에 대한 위 상계일이자 불법행위일인 2012. 7. 19.부터 피고가 그 이행 범위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. 4. 8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오동운

 판사 문기선

판사 김은영